



[2016.3.31.] [27073 , 2016.3.31.,]

() 044 - 215 - 5512

() 044 - 215 - 5531

1 () 「 」

2 () 「 」 (" ") 4 1 2 , 5 2

3 1 가 " "

가

1 .

3 () 4 1 2 " "

1. , 「 」

2.

.

3. 1 2

4 () 4 1 3 5 " "

1. (分散度) 가가

2. (.)

3.

5 () 5 2 3 1 가 " "

, 3 1

1. :

2

2. :

2

3. : 1 2

2

6 () 4 1 2 , 5 2 3 1 가

, 4 1 2 , 5 2 3 1 가 (" "

") 3 , 3 .

1

가 3

가

1

5 1 3 2 , 21 22 , 6 1

가

.< 2010.3.26.>

5 3 1 가 , 18 2 4 , 20 2 3 , 21 2 22 1 2 , 6 1

가

가

.< 2010.3.26.>

21 22 1 1

, 6

1

가

가

.< 2010.3.26.>

(" ")

.<

2008.2.29.>

7 () 5 3 1 가 " " 100 85 .

8 () 4

1

.< 2008.2.29.>

, 6 1

가

.< 2010.3.26.>

9 () 7 1

.< 2008.2.29.>

1.

2.

3. 5

4. 5

5.

6.

10 () 8 14 "

"

1. 16

2. 17 1

3. 18 2

4. 27 1 가

5. 28 4 가

6. 1 3

11 () 9 1 2 " . < 2008.2.29., 2013.3.23., 2014.11.19.>

- 1. 1
- 2.
- 3. 1
- 4. 9 1 4 " . < 2008.7.29.>

- 1. 5
- 2. 10
- 3. 「 」 9 15 3
- 4. 20 가 3 10
- 5.
- 6. 1 5 가

12 () . < 2010.3.26.>

10 3

6

13 (. .) .

- 1. 가
- 2. , 4 , 2 가
- 3. 가
- 가
- 1 2 .

14 ()

가

15 () 11 1 .< [2010.3.26.>](#)

- 1. 5
- 2. 11 1 2 90
- 3. 11 1 1 3 13 가

16 () 12 , .< [2008.2.29.>](#)

1 14 .<

[2008.2.29.>](#)
1 2 .< [2008.2.29.>](#)

17 () .< [2008.2.29.>](#)
13 1

13 2

18 () .< [2008.2.29.>](#) 14

14 .< [2008.2.29.>](#)

- 1.
- 2. 3
- 3. 가

14 3

가

」 (" ")

.< [2011.7.14., 2014.3.24.>](#)

3

.< [2011.7.14.>](#)

- 1.
- 2.
- 3.

19 () 21 (先任非常任理事)
11 2

가 2

20 () 22 2

22 3

21 () 25 1 4 " "
2 1 500

22 () 26 1 4 " "
24 3 26 3 " "

< 2010.3.26., 2016.3.31.>

1. : 2 1 500
2. : ()가 1 500

24 3 , 26 3 4 " "
26 1 " "

< 2010.3.26., 2016.3.31.>

1. 「 」
2. 「 」
3. 「 」
4. 「 」
5. 「 」
6. 「 」
7. 「 」

23 () 가 29 (" ")

5 15

가 2

29 2

가

2

3

< 2010.3.26.>

1

「 」 9 1
.< 2010.3.26.>

24 () 30 3
1 , 1
.< 2010.3.26.>
1
.< 2008.2.29.,
2013.3.23., 2014.11.19.>

24 2() 25 26
가 가 34 1

[2010.3.26.]

25 () 37 3 「 가
」 25

25 2() 39 2 1 2 "

- 1. 가
 - 2. 가
- 39 2 1

- 1.
- 2. 가 가 (假定)
- 3.
- 4. 39 2 2 3 4

2

[2013.10.2.]

26 () <2011.10.14.>
43 2 10
.< 2008.2.29.>

26 2() 43 2 1 ()

3 2

1 4

[2010.3.26.]

27 (가)

가 . < 2008.2.29.>

48

가

가

가

6

4

가

.<

2008.2.29., 2011.7.14.>

가

.< 2011.7.14.>

28 (가)

48 6

가 (" 가 ")

.< 2008.2.29., 2011.7.14.>

1.

2.

3.5

가

4.

가

가

가

가

.< 2008.2.29., 2010.3.26.>

29 ()

51 4

.<

2008.2.29.>

30 () 54 " " 「

」 176 9 1 가

[2013.8.27.]

31 ()

34

가

「

」

19 1

가

[2014.8.6.]

< 19978 ,2007.3.27.>

() 2007 4 1 .
() .
() 21 22
3 21 22 ,

< 20720 ,2008.2.29.>

1 () . , 8
2 7
8 ()
6 7 , 8 1 • 2 , 9 , 6 , 16 1 3 , 17
1 , 18 1 , 2 , 27 1 , 2 , 28 1 ,
4 , 29 " " " " .
11 1
1. 1
2. 1
3. 1
24 2 " " " " " " .
26 1 2 " " " " " " .

<68>

< 20947 ,2008.7.29.>

1 () 2009 2 4 . < >
2 25
26 ()
11 2 3 " 「 」 2 13 3 15 .
" " 」 9 15 3 " .

<113>

27 28

< 22088 ,2010.3.26.>

2010 3 30

< 23024 ,2011.7.14.>

< 23221 ,2011.10.14.>

1 () 2011 10 15

2 ()

26 1

< 24441 ,2013.3.23.>

1 ()

2 4

5 ()

11 1 2

2. 1

24 2 " " " "

<43>

< 24697 ,2013.8.27.>

1 () 2013 8 29 . < >

2 11

12 ()

30

30 () 54 " " r

」 176 9 1 가

<35>

13

< 24780 ,2013.10.2.>

< 25279 ,2014.3.24.>

1 ()

2 ()

18 3 " 「

」 " " 「

」 "

<34>

3

< 25532 ,2014.8.6.>

2014 8 7

< 25751 ,2014.11.19.>

1 ()

5

2 4

5 ()

11 1 2

4

2.

4.

24 2 " " " "

<418>

< 27073 ,2016.3.31.>

[별표 1]

총수입액 산정방식(제2조 관련)

1. 총수입액은 제2호의 기준액에서 제3호를 제외하고 제4호를 합하여 산출한다.
2. 기준액 :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기준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
3. 기준액 중 총수입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가.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 : 대손충당금 등 평가성 총당금의 환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등 세무상 목적의 준비금 환입액 등
 - 나. 정부자금 또는 민간자금을 수혜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손익계산서에 정부자금액 또는 민간자금액을 계상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한 수입액으로서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실질적인 수입액이 아니라고 인정한 금액
4. 기준액 외에 총수입액에 포함되는 금액 : 제3조제1호의 수입액 중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출자금은 제외하며 당해 연도 유입액에 한한다)

[별표 2]

자체수입액 산정방식(제5조 관련)

1.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합계액
 - 가. 법령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민간기업 등의 진입이 가능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 100의 비율을 곱한 금액
 - 나. 법령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독점적 사업권이 부여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 75의 비율을 곱한 금액
 - 다. 법령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민간기업 등의 진입이 가능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한 금액
 - 라. 법령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독점적 사업권이 부여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 25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기타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한 금액
3. 사업외 수입액 : 사업의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총액에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율의 가중평균치를 곱한 금액